

낙시 등의 금지지역 (변경) 지정 행정예고 공고

하천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지정(경기도 제2청 공고 제2007-5110호, 2007.09.10.)된 낙시 등의 금지지역을 변경 지정함에 있어 주민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9월 5일

고 양 시



1. 낙시 등의 금지지역 변경 지정 이유

【공릉천】

- 고양시 구간 공릉천 대부분이 자연형태의 하천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며, 벽제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어 친수공간으로서의 하천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욕구가 매우 크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관내 공릉천 전 구간에 대하여 낙시 등의 금지지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 낙시 금지 구역 지정 이후 하천수질 개선 및 생태계 회복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황에서 낙시객들에 의한 떡밥투입, 취사, 야영 등으로 인한 수질 오염, 어족 유실에 따른 생태계 파괴 등 문제점 발생이 우려되어
- 이를 사전 예방하고자 규제기간 5년으로 지정된 낙시 등의 금지지역을 '연중'으로 변경 지정코자 함.

【창릉천】

- 창릉천은 1996.12월까지 수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차집하는 시설을 설치한 이후 수질이 많이 개선되었고, 행신2택지개발지구와 고양삼송지구가 인접해 있어 친수공간으로서의 하천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욕구가 매우 크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창릉천 전구간에 대하여 낚시 등의 금지지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 낚시 금지 구역 지정 이후 하천수질 개선 및 생태계 회복이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황에서 낚시객들에 의한 떡밥투입, 취사, 야영 등으로 인한 수질 오염, 어족 유실에 따른 생태계 파괴 등 문제점 발생이 우려되어
- 이를 사전 예방하고자 규제기간 5년으로 지정된 낚시 등의 금지지역을 '연중'으로 변경 지정코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낚시 등의 금지지역 하천 및 위치

하천명	등급	위 치	연 장	비고
공릉천	지방하천	고양시 덕양구 선유동(양주시계) ~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파주시계)	13.8km	변경없음
창릉천	지방하천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 ~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한강합류부)	17.6km	변경없음

나. 낚시 등의 금지기간 및 행위제한

1) 금지기간 : 당초)5년 → 변경)연중

2) 행위제한 : 야영, 취사 및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 적용 예외사항 : 학술조사·어종조사 등 부득이한 경우

3.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처분

- 가. 근거 : 하천법 제46조 제6호에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
- 나. 벌칙 : 하천법 제98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의 견 제 출

- 가. 제출기간 : 2012. 9. 5. ~ 2012. 9. 24.
-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라. 제출기관 : 경기도 고양시청 생태하천과(☎031-8075-2753)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우편번호 : 412-702)
 - 팩 스 : 031-8075-9763

5. 기타사항

- 가.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나.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